

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
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의자 : 정현미, 한근수, 이정애,
김동훈, 원주영, 이진환,
김상수

1. 제안 이유

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총칙을 규정(안 제1장)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
나.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를 규정(안 제2장)

- 대비계획, 안전시설 정비·확충 및 관리지역 전수조사, 위험 지역 설정·게시(안 제4조~제7조)

다.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·훈련을 규정(안 제3장)

- 안전관리요원 임무, 모집선발·자격기준 및 교육·훈련
(안 제8조~제10조)

라.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규정(안 제4장)

- 대응계획,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, 상황보고, 관계 기관과의 협조, 비밀유지(안 제11조 ~ 제16조)

마.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도·감독을 규정(안 제5장)

- 안전관리요원 배치, 근무·운영시간, 안전장비, 지도·감독
(안 제17조 ~ 제20조)

바. 예산을 규정(안 제6장)

- 예산 확보, 사무의 위탁(안 제21조 ~ 제22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관련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물놀이 관리지역”이란 하천, 계곡,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.
2. “물놀이 안전사고”란 수영,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. 다만, 고기잡이 행위, 하천 도강,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.
3. “물놀이 위험구역”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, 급류,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.
4. “물놀이 안전관리요원”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안전관리대책기간”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.

6. “특별대책기간”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. 다만, 시장은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.

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

제4조(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)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·운영해야 한다.

1. 물놀이 관리지역(이하 “관리지역”이라 한다)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(이하 “위험구역”이라 한다) 설정·게시 계획
2. 물놀이 안전시설(이하 “안전시설”이라 한다) 정비 및 확충 계획
3. 물놀이 안전관리요원(이하 “안전관리요원”이라 한다) 확보 계획
4.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
5. 주민 홍보 계획
6.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안전시설 정비·확충)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,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

내에 설치해야 한다.

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,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지역 전수조사)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·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, 연간 이용객 수,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·관리해야 한다.

제7조(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)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.

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,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.

제3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·훈련

제8조(안전관리요원)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, 이용객 수, 교대 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

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.

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무원
2. 유급 안전관리요원
3. 119시민수상구조대,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
4.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
5.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

③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
2.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
3.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
4.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(모집·선발 및 자격기준) ① 시장은 제4조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·선발할 수 있다.

②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수난구조 관련 기관·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
2.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

3.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
4. 시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교육 및 훈련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·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1. 구명환, 구명로프,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
2. 심폐소생술,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
3. 물놀이 안전지도, 홍보 등 근무요령
4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5.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② 교육 및 훈련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. 다만,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

제11조(대응계획 수립)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·운영해야 한다.

1.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·운영
2.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·운영

3. 상황 보고 체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
4.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
5.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휴일 비상근무)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·운영해야 한다.

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·운영해야 한다.

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현장점검반)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.

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현장점검반은 확인 목록에 의하여 점검해야 하며,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.

제14조(상황 보고) ① 안전관리요원은 근무지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, 장소, 안전시설, 안

전관리요원 배치 유무, 기상상태, 인명피해 및 인적 사항, 사고원인, 조치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즉시 보고 후 사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고 원인 등을 재확인해야 하며,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·보고해야 한다.

제15조(관계 기관과의 협조)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향후 동일·유사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유지) 제15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며,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.

제5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지도·감독

제17조(배치)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,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.

②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.

1. 관리지역의 규모, 지리적 특성
2.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
3.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

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·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④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: 고정 배치
2.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: 순찰 배치

제18조(운영기간 및 근무시간) 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기간은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. 다만,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19조(근무복 및 안전장비)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
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
2. 근무 중 음주·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
3.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장 예산

제21조(예산 확보)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·확충 예산
2.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

제2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21조(예산 확보)
 -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·확충 예산
 -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물놀이지역 안전시설(인명구조함) 정비 및 확충
-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예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물놀이 안전시설(인명구조함) 37개소 유지·보수 및 신규시설 확충
- 물놀이지역 12개소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을 위한 용역비
- ※ 2025년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으나,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 관리로 전환하고자 함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
총 소요액	456	465	475	484	493
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(인명구조함 관리) 사무관리비	10	10	10	10	10
예방 및 복구사업(안전관리자 배치) 사무관리비	446	455	465	474	483

○ 세부 산출 내역

- 인명구조함 유지·보수 : $(200,000\text{원} \times 37\text{개소}) + \text{신규설치} \approx 10\text{백만원}$
- 안전관리자 배치 : $(\text{물놀이지역 } 12\text{개소} \times \text{근무자 } 4\text{명} \times 2,420,000\text{원} \times 3\text{월}) + \text{재비용} \approx 446\text{백만원}$

※ 2025년 하반기 단순노무원 노임단가 적용,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A팀(월~목), B팀(금~일)으로 운영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: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- 예방 및 복구사업(안전관리요원 배치) : 재난관리기금 활용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시민안전관 박석주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출		456,477	465,406	474,514	483,804	493,281	2,373,482
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예방 및 복구사업		446,477	455,406	464,514	473,804	483,281	2,323,482
재원 조달		456,477	465,406	474,514	483,804	493,281	2,373,482
자체 수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446,477	455,406	464,514	473,804	483,281	2,323,482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난상황의 보고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, 소방서장, 해양경찰서장,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·단체의 장(이하 “관리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그 관할구역,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,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,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·도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·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, 소방서장, 해양경찰서장,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

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삭제

제41조(위험구역의 설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,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
2.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.